

보도 일시	2022. 7. 31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2. 7. 31.(일) 12:00
담당 부서	대변인실	책임자	대변인 이기정 (044-200-6511)
		담당자	사무관 진성훈 (044-200-6515)

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!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「주택법」, 8월 4일 시행 -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-

-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.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.
- (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)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(「주택법」 개정, 8. 4. 시행).
 -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.
 -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.
- (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)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,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함(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, 8. 4. 시행).